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25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치원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17.

3. 회부연월일 : 2025.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Ⅲ. 검토의견

1. 유치원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의 처리) ① <u>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1. <u>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u> 2. <u>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u> 3. <u>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u> 4. <u>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u> ② <u>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u>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유아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¹⁾는 정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3.8.)」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4법²⁾의 하나로 2023년 9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임.

그러나, 현재도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³⁾

1)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3. 10. 26. 제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가 이슈화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교권보호 4법)을 개정함('23.9.)

3) < 최근 3년간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 (자료: 교육부)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최 건수	5건	5건	23건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의 절차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교과전담교사·순회교사 등의 제도가 없어 담임이 행정 및 민원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전체 유치원의 72.5%에 해당하는 5,588개 유치원이 5학급 이하로 교원 수 대비 행정업무의 부담이 크고, 예산 지원도 부족한 상황⁴⁾이므로 개정의 필요성 있다고 보임. <참고 1: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설립 현황 비교>

- 전체 유치원 8,294교 중 54.6%에 해당하는 4,525교는 초등학교의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병설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이 38.4% (3,186교)로 초·중등학교(국·공립 비중 86.0%)와 다르게 민원처리 계획이 유치원 기관별로 상이함.

[유치원 설립 현황]

(유치원: '24.4.1, 교육통계 / 단위: 교, 명, %)

구분		기관 수	교원 수				학급수	
			원장	원감	교원수	직원수	5학급이하	계
국립		3 (0.03%)	2 (0.006%)	3 (0.15%)	37 (0.1%)	14 (0.1%)	2 (66.6)	3 (100)
공립	병설	4,525 (54.6%)	학교장 병행	999* (48.6%)	11,385 (20.5%)	4,695 (17.5%)	4,069 (98.9)	4,113 (100)
	단설	580 (7.0%)			13,295 (24%)	7,031 (26.2%)	130 (22.4)	581 (100)
사립		3,186 (38.4%)	2,936 (83.5%)	1,054 (51.3%)	30,637 (55.4%)	15,118 (56.3%)	1,387 (61.3)	3,010 (100)
계		8,294 (100%)	3,518 (100%)	2,056 (100%)	55,404 (100%)	26,858 (100%)	5,588 (72.5)	7,707 (100)

* 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학급 이하(3,204교)의 유치원의 경우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교육부

4) 단설유치원은 교당 교원 8명, 병설유치원은 교당 교원 2명 수준이고, 교육부 온라인 설문조사('25.7.7.~7.22., 2,764교(전체 기관 중 33%) 응답)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희공간 및 예산 부족 등으로 민원 면담실이 별도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874교(32%)의 유치원은 예산 부족 또는 활용도 저조 등으로 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가 일부 설치 또는 미설치 되어 있음

□ 유사 입법례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음.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525호)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u>학생 및 보호자에게</u>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9조의9(유치원 민원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u>유아 및 보호자에게</u>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만, 유치원 재원 유아의 연령(3~5세) 및 언어·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안 제19조의9제3항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내 대상’에서 ‘유아’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참고로, 「교원지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⁵⁾에 따라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기관 특성에 맞게 유아 및 보호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교사가 민원을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략)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도교육청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유치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서울)가 있고, 유치원은 설립 유형별로 규모와 인력 등 운영이 상이하므로 민원대응시스템으로 운영할 필요(대구)가 있으며, 안 제19조의9제3항에서 민원을 이해하기 힘든 유아는 안내 대상에서 삭제하고 연 1회 안내하는 것이 적정(경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 맞춤형 민원대응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초·중등학교 민원시스템의 유치원 적용에 대한 거부감과 온라인 민원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치원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설계, 민원대응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1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설립 현황 비교

< 유치원 설립 현황 >

(유치원: '24.4.1, 교육통계 / 단위: 교, 명, %)

구분		기관 수	교원 수				학급수	
			원장	원감	교원수	직원수	5학급 이하	계
국립		3 (0.03%)	2 (0.006%)	3 (0.15%)	37 (0.1%)	14 (0.1%)	2 (66.6)	3 (100)
공립	병설	4,525 (54.6%)	학교장 병행 580 (16.5%)	999* (48.6%)	11,385 (20.5%)	4,695 (17.5%)	4,069 (98.9)	4,113 (100)
	단설	580 (7.0%)			13,295 (24%)	7,031 (26.2%)	130 (22.4)	581 (100)
사립		3,186 (38.4%)	2,936 (83.5%)	1,054 (51.3%)	30,637 (55.4%)	15,118 (56.3%)	1,387 (61.3)	3,010 (100)
계		8,294 (100%)	3,518 (100%)	2,056 (100%)	55,404 (100%)	26,858 (100%)	5,588 (72.5)	7,707 (100)

* 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학급 이하(3,204교)의 유치원의 경우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초·중등학교 설립 현황 >

(초·중등학교: '24.4.1, 교육통계 / 단위: 교, 명, 개)

구분	구분	기관 수	교원 수		학급 수	
			교감	교원수	일반학급	계
초	국립	17	227	527	369	385
	공립	6,093	93,685	194,232	115,679	122,989
	사립	73	887	1,839	1,414	1,422
	계	6,183	94,799	196,598	117,462	124,796
중	국립	9	108	412	164	175
	공립	2,631	34,519	96,713	42,736	45,509
	사립	632	4,833	17,655	8,536	8,647
	계	3,272	39,460	114,780	51,436	54,331
고	국립	19	569	1,313	487	503
	공립	1,416	25,123	78,635	31,087	32,915
	사립	945	11,909	49,488	22,245	22,428
	계	2,380	37,601	129,436	53,819	55,846
합계	국립	45	904	2,252	1,020	1,063
	공립	10,140	153,327	369,580	189,502	201,413
	사립	1,650	17,629	68,982	32,195	32,497
	계	11,835	171,860	440,814	222,717	234,973

* 자료: 교육부